

물품구매(공사) 계약에 관한 규정

2006. 03. 01. 최초제정

2010. 09. 01. 부분개정

2012. 08. 01. 부분개정

2013. 06. 01. 부분개정

2019. 08. 09. 부분개정

2026. 08. 10. 부분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전보건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각종 물품의 구매와 시설공사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의 구매라 함은 대학 교비회계(특별회계, 수탁연구비 등 포함)에서 지출되는 모든 물품의 구매와 각종 시설공사 및 용역의 계약을 말한다.

제3조(적용)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는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4조(담당부서) 물품구매(공사)계약에 관한 업무의 분장은 사무분장규정에 따른다.<개정 2013.06.01.>

제5조(업무위임) 물품구매(공사)계약에 관한 위임사항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개정 2013.06.01.>

1. 물품, 공사, 수리 1,000만원 이상 - 총장
2. 물품, 공사, 수리 1,000만원 미만 ~ 300만원 이상 - 부총장
3. 물품, 공사, 수리 300만원 미만 - 해당부서장

제6조(구매의뢰) ①물품의 구매의뢰는 물품소요부서의 장이 구매에 관한 결재를 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구매의뢰를 하여야 한다.

1. 품명
2. 규격(시방서, 도면, 견본, 카달로그 첨부)
3. 단위
4. 수량
5. 용도
6. 제작사 및 제조국
7. 모델명, 모델번호
8. 기타 필요한 사항

②시설공사발주 의뢰는 해당 부서에서 수립한 공사기본계획 관련서류와 검수된 설계도서, 시방서, 입찰유의사항이 명시된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 발주의뢰를 하여야 한다.

③각종 장비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한 보수용역, 경비용역, 청소용역 등에 관한 계약 의뢰는 당해 부서에서 계약에 필요한 면허, 기술, 장비, 시설 등 각종 구비조건을 명시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제7조(구매 및 계약방법) 대학에서 집행하는 각종 물품의 구매 또는 시설공사 계약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①현금구매 : 거래 성격상 후불거래가 곤란한 소액 구매

②수의계약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5호의 규정에서 정한 일정금액 이하의 물품구매, 제조, 용역 등의 계약
2. 입찰에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나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3. 경쟁입찰을 하여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설 2013.06.01.>

③입찰계약 : 예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공사·제조·구매·용역 기타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는 일반경쟁 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제한경쟁에 의하거나 지명경쟁에 의할 수 있다.

제8조(입찰공고) 입찰공고의 방법은 일간신문에의 게재, 지명업체에 통보 지정게시판의 게시, 전산통신망 등에 의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9조(입찰공고 내용)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
3. 현장(현품)설명회 일시와 장소
4. 입찰 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5. 입찰보증금 귀속에 관한 사항
6. 낙찰자 결정에 관한 사항
7.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무효의 관한 사항
8.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예정가격의 결정) 경쟁입찰을 위한 예정가격의 결정방법 및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예정가격의 변경) 입찰에서 유찰되어 재공고 입찰에 있어서도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로서 당초의 예정가격으로는 제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때에는 당초의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절차에 의한 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12조(보증금) ①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입찰 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찰보증금의 금액·납부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보증금의 금액·납부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계약담당자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로 하

여금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의 보증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면제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제3항의 규정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에 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입찰무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한다.

1.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응찰한 입찰
2. 입찰 보증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입찰
3.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4. 현장(현품)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5. 입찰공고나 입찰유의사항을 위반한 자의 입찰

제14조(낙찰자 결정) 입찰결과 낙찰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정한다.

1. 세입이 원인이 되는 입찰에서는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
2. 세출이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 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3. 제2항에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일정액 미만인 물품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는 당해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계약 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계약질서의 준수정도, 과거공사의 품질정도 및 입찰가격등을 종합하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정하여 적격 여부를 심사하며, 그 심사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낙찰자로 결정한다.
5. 단 공사계약에 있어 예정가격 대비 일정비율 이하로 입찰한자는 낙찰자에서 제외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입찰 공고 시 그 내용을 명시하고, 그 비율은 예정가격과 함께 밀봉하여 보관하고 개찰장소에 두어야 한다.
6. 추정가격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지역제한을 둘 수 있다.
7. 동일가격으로 입찰하여 낙찰대상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입찰서를 재작성하여 정한다.

제15조(계약보증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령에 준용한다.

제16조(계약서의 작성) 물품의 구매 및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서의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의계약 금액 이하이거나 납품기한이 짧고, 사후관리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서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17조(계약해제 또는 해지) 계약 당사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여 그 금액이 상한금액에 도달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교비에 귀속시키고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8조(하자보수 및 보증금) ①시설공사, 물품구매 및 제조계약은 하자보수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보증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②하자보수 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하로 하되, 현금 또는 보험회사, 공제 조

합에서 발행한 증서로 납부할 수 있다.

③하자보수 보증기간은 공사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공사의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따르며, 물품의 경우 1년으로 한다.<개정 2013.06.01.>

제19조(지체상금) ①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의무를 특별한 사유 없이 지체하였을 경우에는 그 1일에 대하여 제2항에 정한율의 지체상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②지체상금률은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 등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0분의 1.5로 하며, 공사의 경우에는 1000분의 1로 한다. 다만 계약일반조건을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지체상금의 상한금액은 계약금액의 10%로 한다.

제20조(수의계약) 제7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비상재해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써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
2. 공사에 있어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동일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써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4. 당해물품을 제조, 공급한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 또는 조립하는 경우
5.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의장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6. 당해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유자가 1인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여서는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는 경우
7. 국산 대체가 불가능한 품목으로서 이미 도입된 외자시설이나 기 계장비의 부분품을 구매하는 경우
8.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조사나 설계용역, 감리, 특수측량, 시설관리,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또는 디자인 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의 경우
9. 특정인의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재산을 임차 또는 특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10. 이미 구입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 확충 등을 위하여 구입하는 경우로써 당해물품을 제조, 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 공급을 받을 경우 호환성이 없게 될 때
11. 동식물이나 조경수목, 조경석 등 생산자와 직접 구매하는 경우
12. 물품의 가공, 하역, 운송, 보관, 통관을 하게 함에 있어서 대행을 하는 경우
13. 사회복지법인이나 각 분야별 조합과 단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4. 수요 부서의 사전제안서 기술검토결과 선정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해당 위원회에서 결정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15. 재공고 입찰결과 유찰품목에 대해서는 당초의 규격과 모델로서 예정가격 이하 가장 유리한 가격을 제시한 업체와의 계약하는 경우

16. 물품구매 또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특수성이나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17. 물품구매 또는 공사 추정가격 500만원 이하는 단독견적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3.06.01., 2026.08.10.>

18. 물품구매의 품목이 다양하여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입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물품공급 계약 등의 경우<신설 2013.06.01.>

제21조(단가계약)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 수리, 가공, 매매, 공급, 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가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구매할 수 있다.

제22조(지침서 활용) 물품구매(공사)계약에 관한 규정외의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신설 2013.06.01.>

1. 공사계약 일반조건
2. 용역계약 일반조건
3. 물품구매(제조) 계약 일반조건
4. 청렴계약이행 계약특수조건
5.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6. 물품구매(제조)·용역·공사 입찰유의서

제23조(검수 정의) 이 규정에서 검수라 함은 물품의 구매, 제작, 수리 및 시설공사에 대한 품의서, 견적서, 계약서, 공사 지방서 등의 서류와 대조하여 내용을 확인하고 그 지급 대가의 적정여부를 검사하는 일을 말한다.<신설 2019.08.09.>

제24조(검수) ①대학의 검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근거하여 요구부서에서 검수하며 부재 시 검수대행자를 지정하여 검수하여야 한다.<신설 2019.08.09.>

②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확인으로 검수를 대신할 수 있다.<신설 2019.08.09.>

1. 차량유지에 필요한 물품
2. 외부에 직접 전달하여야 할 화환, 기념품 등
3. 총 금액 5만원 이하의 소모품

③검수자는 품질, 수량, 기타 납품조건이 합당한가를 보아 검수하여야 한다.<신설 2019.08.09.>

④계약서, 견적서, 지방서 및 카다로그 등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한다.<신설 2019.08.09.>

⑤파손, 변질, 감손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한다.<신설 2019.08.09.>

⑥품질에 대한 성분 또는 함량을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타 공인기관에 시험의뢰를 하여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2019.08.09.>

⑦검수가 완료된 후 날인하여야 물품반입이 된다.<신설 2019.08.09.>

제25조(사전사용금지) 검수를 필하지 아니한 물품은 사전에 반입 및 사용할 수 없다.<신설 2019.08.09.>

제26조(검수거부) 검수거부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행한다.<신설 2019.08.09.>

1. 제6조의 검수를 필하지 않은 물품을 사전에 사용했을 경우
2. 지출증빙서의 내용과 현품이 상이한 경우
3. 파손, 변질, 감손되어 있는 경우
4. 현품과 가격이 상이한 경우
5. 기타 현저한 이상이 있는 경우

제27조(재검수) ①검수자는 검수도중 경미한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구매부서에 재검토를 의뢰할 수 있으며 구매부서는 재검토 및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재검수 요청을 할 수 있다.<신설 2019.08.09.>

②검수사항에 분명한 하자가 있음이 판명된 때에는 재검수를 불허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매부서장의 사유서를 첨부하여 재검수 요청을 할 수 있다.<신설 2019.08.09.>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